

소규모합병 공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 등에 의거 2019년 8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이하 “소멸회사”)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 체결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 본건 합병의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주식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서 각 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당사와 소멸회사 간 합병을 통하여, 화학산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화학산업 구조 고도화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화학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자산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결과 그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및 기타 법적 지위 등 일체를 당사에 이전하고 당사는 이를 승계함.

다. 합병비율

당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본건 합병에 의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당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은 없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함. 당사는 본건 합병의 대가로 소멸회사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기타 재산을 제공하지 않음.

라. 당사가 합병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1) 본건 합병으로 인한 당사의 자본금 변경은 없음.

(2)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당사의 준비금의 총액은 관련 법령 및 당사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및 원칙에 따라 결정됨.

마. 합병의 절차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바.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19년 11월 29일

사. 합병기일

2020년 1월 1일

2.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

나. 본점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334-27(평여동)

3.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

2019년 9월 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양식(양식 1 참조)”을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나.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2019년 9월 6일 ~ 2019년 9월 2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19년 9월 20일까지 당사로 서면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일반지원팀,

Tel. [02-829-4237 / 4231]),

라.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마.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 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6일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

대표이사 임 병 연

[양식 1]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양식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귀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귀사와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 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본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 _____

소유주식수 : 보통주 _____주

반대의사 주식수 : 보통주 _____주

2019 년 ____ 월 ____ 일

주소 : _____

성명(법인명) : _____ (인)

연락처 : _____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_____